

형사소송법(9급)

(과목코드 : 133)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③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수는 있다.
 - ④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고 등사할 수도 있다.
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다.
 - ②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3.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의 공범 3명 가운데 1명에 대한 고소는 다른 2명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1명에 대한 고소취소는 나머지 2명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항소심에서 종전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제1심 법원에 환송된 후 진행된 환송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고소인인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이후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경우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정에서는 서면이 아닌 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 ②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5.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조건의 흠결이 확인되고 동시에 범죄사실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형식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당시 유효한 형벌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당해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사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축소사실의 유죄판결을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

6.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7.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만 형법에 근거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원의 재량으로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정지한다.
- ③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지만 검사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직접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8.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의 현장을 촬영한 현장사진은 비진술증거에 해당하므로 사진 가운데 촬영일자 부분 역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은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는 보조수단으로 진술증거인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로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서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이 재연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9.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 ②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 ③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물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적법하다.

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판결보다 중하지 아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11.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재소금지의 기판력이 인정된다.
- ② 배임죄와 사문서위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배임죄 부분에까지 미친다.
- ③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소한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를 기소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12.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13.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도 그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이라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고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 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도 있다.
-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증거 있음을 알면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에게 새로운 증거라면 그 증거의 발견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

14.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는 때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②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5. 피고인의 소환과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 ②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 신문과 판결 선고기일을 제외하고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③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16.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전문서류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는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17.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하더라도 일죄의 전부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②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있다.
- ③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에 대하여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18.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도 판결의 정정이 허용되므로 그 선고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정정신청기간의 경과, 정정판결 또는 정정신청기각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 ②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9. 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로 볼 수 있다.
-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었거나 또는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 법원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③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로 볼 수 없다.

20.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행해지는 증인신문의 경우에도 판사는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사단계에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는 판사에게 공동피의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21.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판결선고 전에는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지만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③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형중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정식재판에서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 ④ 약식명령에 의하여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는 없으나 무죄의 재판을 할 수는 있다.

22.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를 복제·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다음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탐색·복제·출력하여 획득한 정보
-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영장없이 촬영을 한 경우 그 촬영물
- ④ 사법경찰관이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 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고서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압수조서

23.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② 대항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후 신문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할 수 있고,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5.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었어야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후에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이미 공판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와 동일하게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소송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에 해당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증명하면 충분하다.